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계약번호 (2022-세종재해
041259)

결재	담당	대표/현장소장

1. 사업장 개요

사업장 관리번호	609-81 35227-6	사업장 개시번호	92-04 30902-7	회사명	(주)에스에트에이
현장명	문양 3LIF F09B CV STK 물류시스템 7P210680 ASLCV			고용부 관할지청	관안지청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58			시스템비계	없음
공사종류	일반건설공사(일)		공사금액	2,305,000,000원	
발주자	삼성전자(주)		공사기간	2022.05.23 ~ 2022.09.30	
기술지도 대가 (총액)	2,200,000 원		기술지도 대가 (회당)	215,000 원	
공사 주요공정(전체) / (금일작업) : CN 가구전장, LBS 가구 전장 제어설치					
① 가구시설전기 반출 ⇒ ② 자재반입/소용반 ⇒ ③ 가구설치 조립					
⇒ ④ 케이블배선 전장 ⇒ ⑤ 자동제어 Test ⇒ ⑥ 시운전 양산					

* 삼성전자 내 현장 사진확명금지

2. 기술지도 개요

구분	① 건설, 전기, 정보통신	현장 책임자	책임자명 : 김경민 (서명) 연락처 : 010-2237-754
재해예방기관	(주)세종재해예방기술원	점검자	김미경 (서명)
기술지도 횟수	총 (8) 회 중 (4) 회	기술지도 방문일시	2022년 7월 21일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16,000,000원	사용된 안전관리비	1,000,000원
공정률	(72) %	방문 시 근로자수	28명
투입 기계장비	없음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기술지도 방문시 재해예방 대책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비고
C/V, LBS	상하동시 작업중	1) 관리감독자 지정 배치함	
가구전광. 제어 설치	하부 근로자에 자재 공구등의 낙하	2) 해당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지휘아래 작업 실시 3) 작업 방향. 순서 잘라줌 해당 근로자에 숙지 4) 상하동시 작업금지 ↳ 작업구간 관계자와 작업금지 조치 ↳ 관계근로자는 작업자간 신호. 경고 작업 5) 안전 감시자 배치함	
	타층청 작업 통선과 간섭으로 작업시 근로자와 접촉 충돌	1) 근로자 작업구역 설정하여 타층청 작업과 구분 되어 작업이동 관리 2) 작업시 안전 감시자로 하여금 통제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	
	말뚝계사용 작업시 전도 추락	1) 경호한 기성품 사용함 2) 말뚝계 양 끝단 다단 방지 조치함 ↳ 다단 방지 현 설치 3) 비인접 방지 조치 - 미끄럼 방지 태드 부착 4) 안전화. 안전모 착용함	

4. 다음 방문 시 재해예방 대책

유해·위험공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비고
전광. 제어 작업	A형 사다리 사용 작업시 전도 추락	1) 2인조. 겸작업시 2) 아웃리거. 미끄럼 방지 태드 부착 3) 지주부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조부재 설치 4) 1.2~2m 안전모 최상단 다단 작업 금지 2~3.5m 안전모 안전대 착용 최상단 2회 단 다단 작업 금지 3.5m 이상 작업방탄모로 사용 금지	

5. 사업장 지원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기술자료배포(건)	없음	

6. 지난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적사항	이행 여부	비고
CV기권장 제어선치 외 크기	→ 이행함.	

7. 산업재해 발생 유무(✓)

기간	유 (재해 내용)	무
~	현. 산업재해 없음	✓

※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8. 법정장비 사용

장비명	측정대상	사용위치	측정값	개선사항
		측정장비 없음		

※ 조도 75Lux이상 작업 및 통로 / 절연저항 0.2MΩ이상 / 접지저항 100Ω이하 / 산소농도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일산화탄소 30ppm미만

9. 참조사항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계약(변경) 및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실시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총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미만(토목 150억미만)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총 공사금액 20억이상시 선임후 3개월이내 이수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청(인터넷 직무교육센터) : <http://www.dutycenter.net>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반사항 안내자료

관리적 사항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선임 및 직무교육 이수 ① 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② 직무교육 : 신규교육-선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6시간 이수, 보수교육-매2년 전,후 3개월내(총6개월) 6시간 이수 ※ 2시간 온라인 후 4시간 집체교육 또는 6시간 집체교육	선임 94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지휘자 배치 철저	2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구성 : 도급인의 사업주 및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보존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점검반 편성(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사용내역서 비치, 목적외 사용금지 - 매월 사용된 금액은 사용내역서에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현장에 비치 및 목적외 사용 금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① 대상 : 신규로 투입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공종을 바꾸어 새로운 공종에 투입되는 근로자 ② 교육시간 : 작업공종에 투입 전 8시간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② 교육시간 : 4시간 ③ 위반시 처분 : 1인당 5만원 과태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자 정기교육 ① 근로자 : 당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6시간이상 ② 관리감독자 : 년16시간이상 실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별교육 : 다음의 위험공종 투입전 2시간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굴착작업 ○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의 전기용접작업 ○ LPG, 수소가스등 인화성, 폭발성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밀폐공간작업 ○ 석면해체, 제거작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27종) 운전자 16시간 이상 (단,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흙막이 지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맨홀작업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철저	지급
<input type="checkbox"/>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X
<input checked="" type="checkbox"/> MSDS 작성 및 관리 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후 비치 및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② 경고표지 설치 및 사용전 위험성, 취급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input type="checkbox"/>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input type="checkbox"/>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input type="checkbox"/> 흙막이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input type="checkbox"/>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input type="checkbox"/> 2m이상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방법, 필요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이설·보호대책, 사업장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input type="checkbox"/>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비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 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지지방법) 관할 지방노동관서 전담감독관에게 유선통보 (작업전날 16:00 까지 유선통보)	
<input type="checkbox"/> 건물 등의 해체 작업계획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